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6월 8일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6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6. 6. 18.)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천수 관광산업과장)

가. 개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생소한 한자어를 순화하여 조례의 수용성을 높이하고자 함

○ 축제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축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차기 축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제운영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순화 (안 제2조 및 제4조):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생소한 한자어인 “창달”을 이해하기 쉬운 “발전”으로 변경

○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도입 (안 제8조 신설):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주요 축제 및 3일 이상 개최 축제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축제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

다.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장준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주요 지역축제에 대해 축제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축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차기 축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항시 주요 축제에 대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축제 개최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축제평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성과지표 마련이 필수적인 바, 축제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가 향후 축제 운영 및 지원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